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Resolution Mechanism for Investment Disputes between China and Taiwan

하 현 수**
Hyun-Soo Ha

〈목 차〉

- I. 서 론
- II. 중국과 대만 간 상호 투자현황
- III.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 해결제도
- IV.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
- V. 결 론

주제어 : 투자분쟁, 투자분쟁해결제도, ICSID,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

* 이 논문은 2012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I. 서론

중국과 대만은 두 지역 간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꾸준히 경제 교류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 지역 간의 경제교류는 무역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투자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분야에 있어서 과거 대만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에서 2009년 대만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중국 자본의 대만에 대한 직접투자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양 지역 간의 투자관련 정책변화는 투자자 이익의 보호, 투자제한 해소, 투자절차 간소화 그리고 투자분쟁해결제체의 구축 등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중국과 대만 간의 투자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양 지역의 사인(私人) 간의 투자분쟁은 현재 양 지역 각각 자체적으로 분쟁해결규정을 두고 이를 근거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및 대만의 투자자와 중국 및 대만 정부 간의 투자분쟁 그리고 중국과 대만 정부 간의 투자분쟁과 관련해서는 정치적·법률적 요인으로 인하여 양 지역 모두 어떠한 분쟁해결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¹⁾ 더욱이 양 지역 간에 이와 관련한 어떠한 분쟁해결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 하에서 중국과 대만 사인 간의 투자분쟁을 제외한 상기와 같은 두 주체들 간에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해결방식이 아니라 정치적 해결방식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두 지역 간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에는 정치적 해결방식이 투자자와 중국 또는 대만 정부 간 그리고 중국과 대만 정부 간 투자분쟁을 해결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²⁾ 그러나 두 지역 간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또는 정치적 해결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경우에는 투자관련 분쟁의 해결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 간에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거나 각 지역 자체적으로 투자분쟁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적 해결방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해결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사인 간의 상사분쟁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현수는 중국과 대만 간의 상사중재판정의 상호 집행과 관련한

1) 중국과 대만 간의 법률관계 충돌은 하나의 국가 내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사회제도와 연원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법률체계가 존재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또한 장기간에 걸친 정치적 대립과 투쟁의 지속으로 인하여 상호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국제사법의 전통적 이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단일국가 내의 여러 법역 간의 법률충돌문제' 즉 '구제법률충돌(區際法律衝突) 문제'로 평가하는 것이 중국과 대만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曾憲義, 『海峽兩岸交往的法律問題』, 北京: 河南人民出版社, 1992, p. 9 및 陳泉生, 『海峽兩岸關係的法律探討』, 北京: 四川大學出版社, 1992, p. 118 참조.

2) 吳智, "兩岸投資走向自由化的法律路徑選擇", 『時代法學』, 第7卷 第6期, 2009, p. 52.

두 지역의 관련 법률을 소개하고, 두 지역 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합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³⁾ 박완근은 중국과 대만 간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두 지역 간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간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⁴⁾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해결과 관련한 법률 규정들을 일별하고, 노출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남북한 간의 투자분쟁해결제도 구축 및 시행에 일정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중국과 대만 간 상호 투자현황

중국은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제정하여 투자시장을 전 세계에 개방하였다. 대만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1980년대 초부터 2002년 이전까지는 대만 정부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금지로 홍콩, 마카오 등의 제3국을 경유한 간접투자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대만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대폭 증가하였다. 대만의 중국에 대한 1991~2010년까지의 누적 투자건수는 38,685건이었으며, 누적 투자금액은 973.2억 달러로 대만의 동 기간 전 세계 해외투자액인 1,598억 달러의 60.9%를 차지하였다. 또한 대만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전 세계 대중국 직접투자의 5.0%를 차지하여, 홍콩, 버진아일랜드, 일본 그리고 미국에 이어 다섯 번째로 중국에 많이 투자한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1992년 이후 대만의 최대 투자목적지로 중국이 부상하였다.

반면에 대만은 중국 자본의 진입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조건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30년간 중국과 대만 간의 투자는 주로 단방향 발전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9년 6월 30일 대만 정부는 ‘대륙지구 인민의 대만 투자허가 방법’(大陸地區人民來臺投資許可辦法)과 ‘대륙지구 영리기업의 대만에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관한 허가방법’(大陸地區之營利事業在臺設分公司或辦公室處許可辦法) 등을 연속해서 공포하여, 중국 기업의 대만에 대한 투자를 정식으로 개방하였다.⁵⁾ 이에 따라서 중국의 자연인, 법인, 그리고 기타 조직은 대만에 직접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제3국에 기업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대만에 투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⁶⁾ 또한 중국 기업 대만 기업의 주식보유 및 지점·자회사 등의 설치도 가

3) 하현수, “중국과 대만 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1호, 2009, pp. 45-65.

4) 박완근, “중국대륙과 대만사이의 상사중재 현황과 전망 -북한개성공단의 상사분쟁해결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16권 제2호, 2004, pp. 85-104.

5) 중국 기업의 대만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첫 번째 승인은 2009년 8월 12일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가 푸지엔성 푸조우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중국과학기술그룹’(新大陸科技集團)의 대만 투자안을 처음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신중국과학기술그룹은 대만의 독자 회사인 ‘디푸과학기술유한공사’(帝普科技有限公司)의 주식 58%를 매입하여 회사 명칭을 ‘대만신중국유한공사’(臺灣新大陸有限公司)로 개명하였다.

능하도록 하였으며, 독자기업 및 합자기업의 설립도 가능하도록 하였다.⁷⁾

〈표 1〉 대만의 해외투자 현황(1991~2010년)

(단위: 건, 백만 달러, %)

구 분	건수	금액	비중	구 분	건수	금액	비중
중 국	38,685	97,321	60.9	태 국	286	1,737	1.1
영국령 중앙아메리카	2,002	22,826	14.3	일 본	492	1,317	0.8
미 국	4,738	10,980	6.9	파나마	64	1,271	0.8
싱가포르	428	5,439	3.4	필리핀	129	537	0.3
홍 콩	1,069	3,496	2.2	한 국	143	499	0.3
베트남	406	3,015	1.9	합계	50,661	159,841	100

자료: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그리고 2010년 11월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그리고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은 연합으로 ‘대륙 기업의 대만지구에 대한 투자 관리방법’(大陸企業赴臺灣地區投資管理辦法)을 제정하여, 중국 기업의 대만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두었다. 중국의 상기 관리방법 제정은 기존의 단방향 투자에서 중국과 대만 쌍방향 투자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음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

대만 정부는 2009년 6월 30일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건설 등에서 205개 분야를 중국 자본의 對대만 투자대상 분야로 1차 개방하였고, 2011년 3월 42개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에 다시 149개 분야를 추가 개방하였다. 이러한 결과 대만의 중국 자본에 대한 개방율은 제조업의 90%, 서비스업과 공공건설 분야의 각각 50%에 달하고 있다.⁹⁾ 대만 통계에 따르면 대만 정부가 정식으로 중국 자본의 대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2009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중국 자본의 對대만 누적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은 각각 133건, 1.5억 달러로 나타났다.¹⁰⁾ 그리고 주요 투자분야는 전자정보, 광학제품, 자문 서비스, 문화·방송, 도소매업, 물류·창고업 등에 집중되었으며, 약 3,000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 그러나 이처럼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중국 자본의 유

6) 大陸地區人民來臺投資許可辦法 第2條.

7) 大陸地區人民來臺投資許可辦法 第4條.

8) 黃潔, “陸資赴臺法律保障問題研究”, 『河北法學』, 第30卷 第3期, 2012, p. 71.

9) 김다영, 『대만 중국자본 투자 3차 개방』, kotra 경제/산업 동향, 2012, pp. 1-2.

10) 중국 국무부 대만사무관공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중국 기업이 대만에 대한 투자 건수는 총 47건이었으며, 투자금액은 1.37억 달러이었다.

11) 黃潔, 전계논문, p. 70.

인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본의 유치성과가 기대보다 부진한 이유는 중국에 대한 대만의 정치 환경 불안정과 대만 법제 및 정책에 대한 생소함 등의 영향으로 대만 투자에 대해 조심스러운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¹²⁾

〈표 2〉 중국의 對대만 투자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2009년		2010년		2011년 1~4월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	37.5	79	94.4	31	14.3	133	146.2

자료: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Ⅲ.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 해결제도

1.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의 성질 및 유형

(1)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의 성질

중국과 대만 간의 투자분쟁의 성질은 두 지역의 특수한 정치적 관계 그리고 투자분쟁의 다원화와 관련한다.

먼저, 중국과 대만 간의 쌍방 투자 중 발생하는 투자분쟁은 국제투자분쟁이 아니라, 일개 주권국가 내의 두 개의 다른 법역(法域) 간의 투자분쟁에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은 두 지역 모두에서 일치되는 공통된 인식이다.¹³⁾ 하나의 주권국가의 체제 하에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관계를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관계로 여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대만은 두 지역 간의 민상사 영역의 사법협조는 국제사법협조가 아니라 지역사법협조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¹⁴⁾ 또한 주권국가만이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1965년 ‘국가와 타방 국민 간의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12) 包運成, “我國有關‘陸資入臺’法律問題初探”, 『社會科學家』, 2010年 第2期, 2010, p. 74.

13) 중국 헌법 서문은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통일 조국대업의 완성은 대만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국인민의 신성한 책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1조는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행하는 제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로써 규정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대만 헌법 제4조는 대만의 영토와 관련하여 “중화민국의 영토는 그 고유의 영역으로 하며 국민대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 및 대만 모두 중국과 대만 전체를 자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14) 陳力, “海峽兩岸投資爭議解決機制之構建與完善”, 『復旦學報(社會科學版)』, 2011年 第6期, 2011, p. 83.

Other States, 이하 ICSID 협약이라고 한다)과 같은 국제협약은 두 지역 간에 발생하는 투자분쟁 해결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 개의 상이한 법역으로써 두 지역의 평등한 주체 간의 투자분쟁은 섭외 투자분쟁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 또는 중재의 관할권, 법률적용, 법원판결 및 중재판정의 상호 승인 및 집행 상에 있어서 해외기업 투자분쟁의 해결과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¹⁵⁾

다음으로 WTO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두 지역 정부 간의 투자분쟁은 WTO 및 ‘해협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¹⁶⁾(海峽兩岸經濟合作框架協議,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체제하에서 두 개의 단독 관세구역 간의 투자분쟁에 속한다 할 것이다.¹⁷⁾ WTO의 두 개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써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투자분쟁을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에 제소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이밖에 중국과 대만 간에 체결한 ECFA는 본질상 WTO GATT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속한다 하겠다.¹⁸⁾ 따라서 두 지역 간에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분쟁은 ECFA 체제 하에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의 유형

국제투자분쟁은 국제투자활동 중 발생하는 투자자 이익과 관련한 분쟁을 말한다. 이러한 국제투자분쟁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기업 간의 분쟁이다. 둘째는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에 국유화 보상 또는 정부관리 행위 등에 따른 투자보호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다. 셋째는 투자와 관련한 국가 간 즉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정부 간에 투자협약 등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15) 李忠義, “對臺商投資征收及其補償的幾點思考”, 『福建法學』, 2010年 第4期, 2010, p. 12.

16) 동 협정은 2011년 1월 1일 발효된 중국과 대만 간의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보장, 지적재산권 보장조치,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FTA에 유사하다. 그러나 FTA가 전체 내용을 당사국 간 합의한 후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하지만, 동 협약은 단계성 협의로 경제협력의 기본 방향을 먼저 정하고 추후 협상을 계속해나가는 진행형 협정이다. ECFA는 국제적 고립 및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려는 대만의 실리적 목적과 대만을 ‘하나의 중국’에 포섭시키려는 중국의 정치적 고려가 결합되어 협상 개시 5개월 만에 타결된 자유무역협정이다. korta, 『ECFA 우리기업에게 득인가, 실인가?-ECFA 체결 1주년 점검』, KOCHI자료 11-008, korta, 2011, pp. 7-8 참조.

17)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홍콩과 마카오는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나,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그리고 대만은 2002년 1월 1일에 WTO에 각각 가입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WTO의 틀 안에서 ‘1국가 4개의 의석’을 갖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중국은 WTO에 ‘국가’ 주체로서 가입하였고, 대만, 홍콩, 마카오는 ‘독립관세지역’(Separate Customs Area)으로 가입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서 행한 외교 전략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張萬明, 『涉臺法律問題總論』, 北京: 法律出版社, 2003, p. 20 참조.

18) GATT 제24조의 지역조항(regional clause)과 ‘GATT 1994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는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GATT 제24조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지역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국경무역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GATT 1947 지역조항에 해당되는 지역통합협정이다. 여기서 지역조항이라 함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잠정협정의 3가지 형태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GATT 의무로부터의 예외를 허용하는 GATT 1947 제24조 제4항~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의미한다. 김석민, “한·중 FTA 이행을 위한 무역구조조항의 비교법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2007, p. 544 참조.

발생하는 분쟁이다.¹⁹⁾

중국과 대만 간의 투자분쟁도 상기와 동일하게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첫째, 두 지역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등 평등한 주체 간에 발생하는 투자관련 분쟁으로 이러한 유형은 사인 간의 분쟁에 속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대만 기업과 중국의 합자 또는 합작파트너 간에 합자 또는 합작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대만 투자자와 투자기업 내부의 구성원 즉 주주, 노동자, 노조 등 간에 발생하는 분쟁 등이 이러한 유형의 분쟁에 속한다.

둘째, 대만 또는 중국 자본과 투자지 정부 간의 투자분쟁이다. 국제투자분쟁에 있어서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관리적 투자분쟁에 속하는 것으로, 투자유치국 정부가 환경, 국민건강, 노동권의 등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가 투자자의 권익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경우이다.²⁰⁾ 중국과 대만 간의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유치국 정부의 직접 또는 간접수용, 환경보호, 노동자보호, 행정심사 등의 관리조치의 시행으로 인하여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국과 대만 정부 간의 투자분쟁이다. 국제투자분쟁 관계 중에서 투자자 모국과 투자유치국 정부 간에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주요 원인은 쌍방 간의 투자보호협정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한 경우와 WTO 체제 하에서의 TRIMs 또는 GATS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다. 두 지역 간 ECFA의 체결 이전에도 중국과 대만은 각각 WTO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단독의 관세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지역 정부 간에 발생하는 투자와 관련한 분쟁은 TRIMs 또는 GATS의 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분쟁일 수도 있었으며, 그리고 ECFA의 체결됨에 따라 향후 두 지역 간에 투자보장협약 및 투자분쟁해결협약이 체결된다면, 두 지역 정부 간에 상기 협약의 이행, 적용 그리고 해석을 통해 투자분쟁의 해결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²¹⁾

2. 중국과 대만 간의 투자분쟁해결과 관련한 규정

(1) 중국의 對대만 투자분쟁해결 규정

중국 국무원은 1988년 7월 ‘대만동포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國務院關於鼓勵臺灣同胞投資的規定)을 공포하였다. 동 규정은 대만 자본의 중국 투자와 관련한 최초의 전문 규정으로써,²²⁾ 투자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제20조 제2항은 대만자본의 투자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

19) 董世忠, 『國際經濟法』, 北京: 復旦大學出版社, 2009, p. 411.

20) 徐崇利, “晚近國際投資爭端解決實踐之批判: ‘全球治理’理論的引入”, 『法學家』, 2010年 第3期, 2010, p. 175.

21) 王淑敏, “后ECFA時代兩岸投資爭端的司法協助探析”, 『國際貿易問題』, 2011年 第7期, 2011, pp. 162.

22) 중국 국무원의 ‘대만동포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대만 투자자가 대륙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합자경영기업 등 3자기업에 대하여 국가의 관련 섭외 경제법률과 법령의 규정을 참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상응하는 대우를 한다”고 규정하여 대만 주민이 정치적으로는 외국인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외국인에 준

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²³⁾ 중국은 1994년 3월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대만동포투자보호법’²⁴⁾(臺灣同胞投資保護法)을 제정하여 대만 기업의 투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법 제14조는 “대만동포 투자자와 기타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공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간에 발생한 투자관련 분쟁에 대해 당사자는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협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중의 중재조항 또는 사후 합의한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체결하지 못하였거나, 사후 서면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999년 12월 국무원은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을 구체화한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실행세칙’²⁵⁾(臺灣同胞投資保護法實施細則)을 제정하여, 동 세칙 제29조에서 “대만동포 투자자와 대륙의 공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간에 발생한 투자관련 분쟁은 당사자가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중의 중재조항 또는 성립된 서면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중국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대륙의 중재기관은 국가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대만동포를 중재인으로 초빙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계약 중 중재조항을 체결하지 못하였거나 사후 서면 중재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대만 자본의 중국내 투자와 관련하여 야기된 분쟁에 대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중재기관에 대하여 ‘대만동포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은 “중국 또는 홍콩의 중재기관”로 규정하고 있고,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은 단순히 “중재기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실행세칙’은 “중국의 중재기관”로 규정하여 중국,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의 중재기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가능한 중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²⁵⁾

한편, 법원판결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민상사법공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이 문제는 주권국가 간에 존재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한 대우를 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혐의경제 관련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23) 중국 국무원 ‘대만동포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 “대륙에 투자한 대만 투자자의 계약이행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계약상의 중재조항 또는 사후에 합의한 중재합의에 의거하여 대륙 또는 홍콩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24) 동 법은 ‘대만동포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의 내용 중에서 일부 중요한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으나, 종전의 규정이 국무원 공포의 ‘행정법규’(行政法規)에 불과한 것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국가의 정식 ‘법률’(法律)의 형식으로 제정하였는데 큰 의의가 있다.

25) 중국 상무부가 중국과 대만 간의 무역을 규범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0년 12월 제정한 ‘대만지구와의 무역관리 방법’(對臺灣地區貿易管理辦法) 제12조에서 만약 대만과의 무역활동 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협의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당사자가 협의·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협의·조정이 실패한 때에는 계약상의 중재조항이나 사후에 체결한 서면중재합의에 의거하여 ‘중국의 중재기관’에 보내 중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 중에 중재조항을 두지 않았고 사후에도 서면의 중재합의를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양 법역 판결 및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전제는 쌍방이 서로 상대방 법률의 역외효력을 승인하고, 상대 법률에 따라 취득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과거 대립·단절된 관계에 있었던 때에는 두 지역은 상대의 법률을 서로 승인하지 않았고 따라서 상대방 법원판결과 중재판정에 대한 상호 승인 및 집행문제도 논의되지 않았다.²⁶⁾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결국 1998년 5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의 대만지구 관련 법원의 민사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關於人民法院認可中國臺灣地區有關法院民事判決的規定)을 공포·시행하였다. 동 규정 제19조는 “대만지구 민사판결 및 대만지구 중재기관 중재판정의 승인 신청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승인된 대만지구의 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대만지구 법원의 민사사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의 승인 신청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었다. 즉, 대만지구 법원 또는 중재기관이 내린 민사사판결 및 중재판정에 대해 동 규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였다.²⁷⁾

이후에도 중국은 1999년 5월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에 승인 신청된 대만지구 관련법원 민사조정서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급 또는 확인한 조정합의서의 수리여부에 대한 회답’(最高人民法院關於當事人持臺灣地區有關法院民事調解書或者有關機構出具或確認的調解協議書向人民法院申請認可人民法院應否受理的批復) 그리고 2001년 3월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에 승인 신청된 대만지구 관련법원의 지급명령의 수리여부에 관한 회답’(最高人民法院關於當事人持臺灣地區有關法院支付命令向人民法院申請認可人民法院應否受理的批復)을 공포하여 사법협조 범위를 민사판결에 더하여 대만지구 법원의 민사조정 및 지급명령까지 확대하였다. 2008년 4월 시행된 ‘대만의 민사소송 문서의 송달에 관한 몇 가지 규정’(關於涉臺民事訴訟文書送達的若干規定)에서 인민법원에 접수된 대만지구의 관련법원으로부터 위탁된 중국내 당사자에 대한 민사소송문서의 송달과 관련한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ECFA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인민법원의 대만지구 관련법원 민사판결 승인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보충규정’(最高人民法院關於人民法院認可臺灣地區有關法院民事判決的補充規定)을 시행하여, 대만 법원의 민사판결의 승인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26) 戴肇洋, “建立海峽兩岸經濟合作之研究-兼論簽署ECFA續待解決之問題”, 「綜合競爭力」, 2010年 第4期, 2010, p. 128.

27)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의 대만지구 관련 법원의 민사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규정된 승인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승인을 신청한 민사판결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②승인을 신청한 민사판결이 피고가 결석하고 또는 합법적인 소환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피고에게 소송행위능력이 없고 또는 적절한 대리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경우, ③당해사건이 인민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 ④당해사건의 쌍방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체결한 경우, ⑤당해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이 이미 판결하였거나, 또는 외국·경외지구의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나 경외중재기구에서 내린 중재판정이 이미 인민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⑥승인을 신청한 민사판결이 국가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주는 경우.

정리하였다.²⁸⁾

(2) 대만의 對중국 투자분쟁해결 규정

대만의 중국 자본 對대만 투자와 관련한 주요 법률은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주민관계조례’²⁹⁾(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이하 양안관계조례라 한다)로 1992년 7월 제정되었다. 그러나 ‘양안관계조례’에서는 대만과 중국 간의 투자분쟁해결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동 조례 제74조에 의하면, 중국에서 이루어진 민사확정판결이나 민사중재판정은 대만지구의 공서양속에 위반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裁定)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의 승인 재정을 얻은 판결·판정이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집행명의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제요건으로서 대만에서 내려진 민사확정판정·민사중재판정을 중국 법원에 승인판정을 신청할 수 있거나 또는 중재명의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중국의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³⁰⁾

그리고 2009년 6월 30일 공포된 ‘대륙지구 인민의 대만 투자허가 방법’³¹⁾(大陸地區人民來臺投資許可辦法), ‘대륙지구 영리기업의 대만에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관한 허가방법’³²⁾(大陸地區之營利事業在臺設分公司或辦公室處許可辦法) 그리고 ‘대륙자본의 대만 투자 종목’³³⁾(大陸資本赴臺投資業別項目) 등에서는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에 따른 심사 및 허가, 투자범위와 영역 등의 문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만의 관련 법규에는 중국 자본의 대만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이들의 권익보호 및 분쟁해결과 관련한 어떠한 전문 규정도 제정해 놓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3)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해결관련 협정

중국과 대만은 협정을 통해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원칙규정을 약정하였다. 2010년 6월 29일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와 대만의 해협교

28) 徐步林, “海峽兩岸司法協助現狀及發展”, 『法制與社會』, 2009年 第9期(下), 2009, p. 143.

29) 동 조례는 단기적인 교류 단계에서의 교류 및 이에 파생하는 문제 해결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기본법에 해당한다. 대만과 중국 간의 분단 현실이나 법률체계에 비추어 두 지역 교류를 완전히 국내문제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완전히 국제문제로 취급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분단국가 특유의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동 조례는 실제법적 성격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절차법적 성격도 갖고 있으며, 민사법, 행정법 및 형사법적인 성격을 모두 함유하며, 국내법인 동시에 국제사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종합적 법률로서 세계에서 선례를 보기 힘든 입법례라고 할 수 있다. 동 조례는 총 6개 장, 96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연구』, 법무부, 2008, p. 405 참조.

30) 대만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에서 외국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지 않고 판결에 대한 상호승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판결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외국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집행명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륙의 확정판결은 재정으로 인가를 한 후에 비로소 효력을 인정하는 반면 외국의 판결은 별도의 재정 절차 없이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서 대륙의 확정판결이 외국판결보다 낮은 효력을 부여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중국 및 외국의 중재판정에 대하여 동일한 승인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가 합의한 ECFA 제10조 분쟁해결조항에서 ①쌍방은 본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적절한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 최대한 빨리 합의를 달성하여, 본 협정의 해석, 실시 그리고 적용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 ②본 조 제1항에서 가리키는 분쟁해결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본 협정의 해석, 실시 그리고 적용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쌍방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본 협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양안경제협력위원회’(兩岸經濟合作委員會)가 적절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합의한 적절한 방법은 2009년 4월 중국과 대만 간에 합의한 ‘해협양안 공동 범죄예방 및 사법협조 협정’³¹⁾(海峽兩岸共同打擊犯罪及司法互助協議)으로 동 협정 제1장 제1조 제4항에서 대만과 중국은 호혜원칙에 따라 공공질서 또는 선량풍속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에서 내려진 민사판결과 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 한다는 원칙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IV.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

1.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해결제도의 특징

중국과 대만 간의 투자분쟁은 양국 간의 정치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국가들 간의 투자분쟁과는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대만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였으나 특수한 정치적 원인으로 진정한 의미의 중국과 대만 간 상호 투자는 2009년 6월에서나 비로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결과 현재까지도 대만의 對중국 투자액에 비해 중국의 對대만 투자액은 저조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투자분쟁해결과 관련한 입법에 있어서도 두 지역 간 협정을 통하기 보다는 각 지역별로 단독 입법을 통해 투자분쟁에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중국의 관련 법률이 대만에 비해 폭 넓게 제정되어 있다.³²⁾

둘째, 중국은 다양한 법률 및 행정법규의 제정을 통해 대만 자본의 중국내 투자권익의 보호 및 투자분쟁해결과 관련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양안관계조례’에서 중국의 민사사판결 및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규정에서 간접적으

31) 동 협정은 중국과 대만의 사법협조와 관련하여 최초의 종합적인 양자 간 협정으로, 민사사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법협조가 가능하도록 영역을 확대하였다. 동 협정은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지역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단속 및 사법협조의 기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정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두 지역 간 추가적인 협의가 요구된다. 王淑敏, 전계논문, pp. 163-164 참조.

32) 黃萃·紀文華, “區域貿易協議爭端解決機構建與實效反差研究”, 『國際貿易研究』, 2010年 第12期, 2010, p. 166.

로 두 지역의 투자분쟁해결과 관련한 규정을 둔 것 이외에는 중국 자본의 대만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권익보호 및 분쟁해결 관련 어떠한 전문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³³⁾

셋째, 중국과 대만이 단독으로 제정한 투자분쟁해결과 관련한 규정들은 평등한 주체들 간의 투자분쟁에 한정되어 있다. 즉, 대만 투자자와 중국의 기업 또는 개인 간의 투자분쟁에 한정된 것으로 대만 투자자와 중국 정부기관 간의 투자관리 또는 이로 인해 야기된 분쟁을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두 지역의 투자관련 정부기관 간의 분쟁은 배제되고 있다.³⁴⁾

넷째, 중국은 두 지역 간 투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관 및 중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즉, 1988년 ‘대만동포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에서는 당사자가 관련 분쟁을 “대륙 및 홍콩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1999년 ‘실시세칙’에서는 당사자가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중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륙,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의 중재기관의 이용도 가능하도록 하였다.³⁵⁾ 이밖에 ‘실행세칙’은 중국의 입법 최초로 “대륙의 중재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대만동포를 중재인으로 초빙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³⁶⁾

다섯째, 중국과 대만은 각각의 입법을 통해 상대방 법원의 민상사판결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관련제도를 제정하여,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투자분쟁해결제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³⁷⁾

2.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해결제도 구축

(1) 국제 투자분쟁해결제도의 주요 체제

현재 국제적으로 상이한 유형의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이한 분쟁해결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이 중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자연인, 법인, 기타경제조직 등 평등주체 간에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통상적으로 국제민사소송 또는 국제상사중재를 통해 해결된다. 분쟁당사자는 절차의 선택에 있어서 비교적 큰 자주권을 갖으며, 동시에 일국 법원이 내린 판결 및 중재기관이 내린 판정은 관련 국제조약 및 상호 호혜원칙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승인 및 집행을 획득하게 된다.

다음으로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에 발생한 투자분쟁으로, 이와 관련하여 대

33) 尹紅, “臺灣地區‘陸資入臺’相關法律分析”, 『湖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11卷 第3期, 2010, p. 72.

34) 林銀木, “‘陸資入臺’可能面臨的投資風險及其應對之策”, 『福建法學』, 2010年 第2期, 2010, p. 16.

35) 金文杰, “大陸赴臺投資保險可行途徑淺析”, 『益陽職業技術學院學報』, 2010年 第1期, 2010, p. 11.

36) 姚若賢, “臺商隱名投資權益的法律保護”, 『福建法學』, 2009年 第3期, 2009, p. 63.

37) 吳智, “從WTO法角度審視臺灣限制大陸直接投資的非法性與不當性”, 『國際經濟法學刊』, 第15卷 第1期, 2008, p. 226.

부분의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에서는 ICSID 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거나, 특정 중재기관을 정하지 않고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하거나, 또는 분쟁당사자의 합의로 중재기관을 정하여 중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의 핵심은 투자 분쟁과 관련하여 외국투자자 개인이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판정부에 중재를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투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자는 동 정부를 해당국 국내법원뿐 아니라 국제중재판정부에도 선택적으로 제소 가능하도록 양국 간 협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³⁸⁾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국 정부와 투자국 정부 간의 발생한 투자분쟁으로, 이들 투자분쟁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쌍방 간의 투자보호협정의 이행,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호협상과 같은 외교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특별중재판정부 방식을 통해 해결한다. 예를 들어 ‘중국-영국 투자보호협정’(中英投資保護協定)은 “본 협정의 실시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양국 정부는 외교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중재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마카오 투자보호협정’(中澳投資保護協定)은 “체약 쌍방은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즉시 전력을 다해 우호적인 협상 및 교섭을 통해 해결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둘째, WTO 체제 하에서 TRIMs 및 GATS 협정의 이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WTO DSB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지역경제통합의 점진적인 확대에 인하여, 현재 국제사회는 상이한 지역경제 분쟁 해결 방식들이 형성되었다. 요컨대 어떠한 방식을 택할 것인가는 경제통합 정도 및 체약국 경제의 상호의존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³⁹⁾ 예를 들어, EU는 현재 전 세계에서 경제통합의 수준이 가장 높게 이루어진 지역통합으로서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법률체제 위주의 해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초국가적 요소를 갖는 EU법원은 이러한 분쟁해결제도에 강제성 및 사법성을 갖는다. 그러나 EU에 비하여 체약국 간 상호 경제의존 정도가 낮은 중국-ASEAN FTA는 각 체약국들의 정치적 상호신뢰 및 경제적 자신감에 의해 구축될 수 있는 법률체제 특징의 분쟁해결체제는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ASEAN FTA는 체약국 정부 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협상, 화해 또는 조정 위주의 분쟁해결방식을 취하고 있다.⁴⁰⁾

38) 이제민, “ISD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13권 2호, 2006, p. 104.

39) 吳智, 전제논문, p. 227.

40) 孫志煜, “區域經貿爭端解決的制度與實踐—以中國-東盟自由貿易區為例”, 『法學評論』, 2011年 第1期, 2011, pp. 91-92.

(2)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해결제도의 구축

1) 사인 간 투자분쟁해결제도의 구축

현재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을 포함한 사인 간의 상사분쟁해결제도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전문입법을 통한 대만자본의 중국내 투자에 따라 발생한 분쟁에 대한 해결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두었음 뿐만 아니라 대만 법원의 민상사판결, 지급명령, 화해서 그리고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었다.⁴¹⁾ 대만의 경우는 ‘양안관계조례’를 제외하고는 중국 자본의 대만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이익보호 및 분쟁해결과 관련한 전문적인 입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 사인 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대부분의 투자가 단방향 즉 대만의 對중국 투자가 대부분이고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양 지역 사인 간 투자분쟁해결제도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과 대만의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투자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2003년 대만의 중화중재협회(中華仲裁協會)는 신청인 대만 화화치지유한공사(和華置地有限公司)의 법인대표 옹준겸(翁俊謙)이 피신청인 중국 개가유한공사(凱歌有限公司)의 오명수(吳明秀)를 상대로 골프장 투자와 관련한 채권채무분쟁의 중재신청을 수리하였다.⁴²⁾ 2004년 7월 23일 중국 하문시 중급인민법원은 동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을 승인하였다. 이는 중국 법원이 대만의 중재기관에서 내린 중재판정에 대한 최초의 집행승인 사건이었다.

다만, 현재 두 지역의 사인 간 투자분쟁해결제체는 특히 사법협조체제는 각각의 단독 입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두 지역간 공통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법협조의 소극화, 간접화 현상이 존재하게 되고, 두 지역 사법협조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⁴³⁾ 즉, 중국은 1998년을 시작으로 연속해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대만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 화해서 그리고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대만의 관련입법은 비교적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활용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즉 대만은 1997년 5월 ‘양안관계조례’ 제74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동 조 제1항과 제2항은 대만에서 내려진 민사확정판결 및 민사중재판정이 중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대만은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에 대하여 상호대등조건에 입각하여 중국의 중재판정을 승인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을 추가한 것이다.⁴⁴⁾

41) 盧炯星·霍一峰, “論海峽兩岸投資中的問題及法律對策”, 『海峽兩岸WTO法律論壇論文集』, 2007, p. 215.

42) 中華仲裁協會于2003年11月4日作出的(2002)仲聲仁字第135號仲裁裁決.

43) 陳力, “海峽兩岸民商事法方面協作的困境與出路”, 載于『海峽兩岸民生與經貿往來中的法律問題』, 北京: 法律出版社, 2009, pp. 89-92.

44) 林一飛, 『中國國際商事仲裁裁決的執行』, 北京: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2006. 12, p. 233; 劉想樹, 『中國涉外仲裁裁決制度與學理研究』, 北京: 法律出版社, 2001, p. 247; 하현수, 전제논문, p. 50.

따라서 중국과 대만은 2009년 체결한 ‘해협양안 공동 범죄예방 및 사법협조 협정’에 규정된 원칙적 사항들을 보다 구체화 하여, 두 지역 간 사법문서의 송달협조, 상호협력 증거조사, 그리고 판결 또는 중재판정의 상호 승인 및 집행 등을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⁴⁵⁾

2) 사인 투자자와 두 지역 정부 간의 투자분쟁해결제도의 구축

ECFA 제5조는 중국과 대만은 최대한 빨리 협의를 통해 투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동의하고, 투자협정의 내용은 투자보장체계의 구축, 투자관련 규정의 투명성 제고, 점진적인 상호간 투자제한 철폐, 그리고 투자편리화 촉진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ECFA 규정은 기타 국가들 간의 투자보장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이중 투자보장체계는 주로 투자자 및 그 투자자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통상 투자대우, 수용·외환·동란 위험 그리고 투자유치국 정부의 위약위험 등의 정치적 위험의 보호, 그리고 투자분쟁해결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1994년 제정한 ‘대만동포 투자보호법’에서 대만 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동 법 제4조에서 “국가는 대만동포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국유화 및 수용을 실행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근거하여 대만동포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법률절차에 근거하여 수용을 실시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실행세칙’ 제24조는 수용에 따른 보상기준과 보상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보상금은 동 투자의 수용결정 시점의 가격에 상당하여야 하며, 수용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합리적 이율에 다른 이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 외화로 환전하여 대만 또는 그 밖의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그리고 동 세칙 제21조는 “대만동포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획득한 투자이익, 기타 합법적 수익 그리고 청산 후의 자금은 법률에 따라 대만 또는 그 밖의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 투자자와 중국 정부 간에 정부의 투자관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 자본의 대만에 대한 투자에 따른 권익보장과 관련하여 실체 및 절차 규정뿐만 아니라 중국 투자자와 대만 정부 간의 투자관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분쟁의 해결에 대

45) 동 협정은 사법협조와 관련하여 법률문서의 송달, 증거조사 그리고 판결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문서송달과 관련하여 동 협정은 쌍방이 자신의 규정에 따라 사법문서의 송달의 상호협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사법문서의 송달을 요구받은 측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달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요구를 받은 자는 이행결과를 요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즉시 송달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요구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증거조사와 관련하여 쌍방은 자신들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에 협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③판결 및 중재판정의 승인과 관련하여 쌍방은 호혜원칙에 따라 공공질서 또는 선량풍속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확정판결 및 중재판정을 상호 승인 및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있다.⁴⁶⁾

사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투자분쟁은 사인 간의 투자분쟁과는 다르며, 또한 정부 간의 투자분쟁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우선, 이러한 종류의 분쟁은 사인 투자자의 개인 이익과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국의 공공이익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인 분쟁의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상사중재기관으로는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관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홍콩중재센터 또는 두 지역의 기존 중재기관 단독 또는 연합 중재는 실행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이밖에 이러한 종류의 분쟁은 투자유치국 정부의 투자관리 행위의 정당성 및 합법성과 관련된 경우가 많고, 직접적으로 분쟁주체 쌍방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됨으로 중재와 같은 법률적인 방법에 협상·조정과 같은 정치적인 방법을 추가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⁴⁷⁾ 따라서 중국과 대만의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분쟁은 ICSID 방식을 참조하여 이러한 종류의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문중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ECFA를 뛰어 넘어 중국, 대만, 홍콩, 그리고 마카오 간의 협상을 통해 투자분쟁과 관련한 전문중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두 지역 정부 간 투자분쟁해결체도의 구축

중국과 대만 정부 간의 투자분쟁 해결체제의 구축에 있어서 다음 몇 가지 점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첫째, 중국과 대만 양자구조로 할 것인지, 홍콩 및 마카오를 포함한다자구조로 할 것인지, 또는 기존 WTO DSB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둘째, 양국 정부 간의 투자분쟁해결방식을 정치적 해결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법률적 해결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방식과 법률적 방식을 혼합한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합의하여야 한다.

먼저, 두 지역 정부 간의 투자분쟁은 ECFA 체제하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양안사지(兩岸四地)⁴⁸⁾의 다자간 구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비록 중국의 일부 학계에서 초기에 중국 및 대만에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는 양안사지(兩岸四地) 자유무역지대 및 일국사방(一國四方) 분쟁해결체제의 구상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⁴⁹⁾ 이러한 구상과 현

46) 陳力, 전계논문, pp. 86-87.

47) 陳力, 상계논문, p. 87.

48) ‘양안사지’(兩岸四地)란 중국, 대만, 홍콩 그리고 마카오를 의미한다.

49) 예를 들어, 대만의 WTO 가입 초기 학계에는 양안사지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구상이 이미 구축되었다. 양안사지의 자유무역지구가 성립되며, 양안사지를 하나로 하여 WTO 분쟁해결체제와 상호 연결시킨 독립되고, 자치적이며,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분쟁해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여기에서 독립이란 이 체제가 양안사지 각자의 사법관할에서 독립하는 것이며, 또한 WTO의 분쟁해결체제에서 독립하는 것을 가리킨다. 신속 및 효율은 전문가조직과 상소기구의 설치 및 구성방식의 신속화를 가리키며, 전문가조직의 구성은 분쟁당사자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상설 상소기구의 구성원은 네 지역(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파견된 법관 및 전문가로 구성되며, 전문가조직이 내린 판정에 불복하는 상소사건을 처리한다. 일국사방(一國四方) 분쟁해결체제의 구제의 이용은 네 지역 간 분쟁의 WTO 분쟁해결체제에 제기의 전제조

실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단기 내에 제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중국은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과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이 홍콩, 마카오와 각각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CEPA: Th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⁵⁰⁾은 대만과 체결한 ECFA와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CEPA 체제하에서 중국과 홍콩 및 마카오는 무역구제조치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ECFA 체제하에서는 무역구제조치를 채택하고 있다.⁵¹⁾ 다른 예로 홍콩·마카오 정부와 중국 정부는 명확히 지방과 중앙 정부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과 홍콩·마카오의 CEPA는 분쟁해결처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발생한 분쟁은 연합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방식은 다분히 정치적 해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⁵²⁾ 그러나 중국과 대만 간에는 비교적 큰 정치적 불일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 간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홍콩·마카오에 비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정치적 방식을 통해 두 지역 정부 간의 투자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중국과 대만 간의 투자관련 분쟁을 WTO 체제 하에서 해결하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 WTO의 체약국으로서 중국과 대만은 경제관련 분쟁을 WTO DSB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나, 중국은 대만의 WTO 가입과 함께 두 지역 간 경제문제는 일개 주권 국가 내부의 상이한 관세구역 간의 문제에 속한다고 선언하였다.⁵³⁾ 따라서 이는 WTO의 다자구조 하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협상과정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⁵⁴⁾ 실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DSB에 소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對중국 투자의존 규모가 중국의 대만에 대한 투자의존에 비하여 훨씬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 측면을 고려하면, 대만 또한 WTO DSB에 소를 제기할 동기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⁵⁵⁾ 이처럼 두 지역이 WTO 가입 후 지금까지

건이다. 王傳麗, “WTO: 一介自給自足的法律體系-兼論一國四地經貿法律新發展”, 載陳安主編『國際經濟法學刊(第11卷)』,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p. 82 참조.

50) 중국-홍콩 CEPA는 2001년 11월 홍콩특별행정장관이 중국 중앙정부에 제출한 ‘유사 자유무역지대’ 구상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어, 1년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2003년 6월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매년 보충 협정을 통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09년 5월에는 6차 보충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중국-마카오 CEPA는 2003년 10월 체결되었으며, 중국-홍콩 CEPA와 동일하게 보충협정을 통해 개방분야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홍콩/마카오 간의 CEPA는 중국이 일국양제라는 특수한 체제 속에서 홍콩과 마카오에 더 폭넓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서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다른 FTA에 비하여 그 개방 폭이 넓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홍콩 CE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서비스협상을 중심으로』, KIEP 지역경제 포커스 09-28호, 2009, pp. 2-3 참조.

51) 彭莉, “論ECFA框架下兩岸經貿爭端解決機制的建構”, 『臺灣研究集刊』, 2010年 第6期, 2010, p. 38.

52) 중국-홍콩 CEPA 제19조 제5항에서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간단히 규정하고 있다. “쟁방은 우호협작의 정신에 의거하여, ‘안배’의 해석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위원회는 협상과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여 결정을 내린다.”

53) 徐步林, 전개논문, p. 145.

54) 王淑敏, 전개논문, p. 164.

55) 劉仁山, “我國大陸與臺灣地區民商事判決相互承認與執行現狀, 問題及思考”, 『中國國際私法學會2009年會論文集』, 2009, p. 1045.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직접적으로 충돌한 사실이 없다.⁵⁶⁾

다음으로, 중국과 대만의 정치관계 및 경제관계의 현실을 보면, 분쟁해결의 방식에 있어서 완전한 정치적 수단 또는 완전한 법률적 수단을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적절한 방법은 ECFA 체제하에서 구축된 협상 또는 합의 등의 정치적 수단 위주일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중재 또는 전문가조직 등의 법률적 수단을 채용한 혼합 방식일 것이다.

협상은 중국과 대만 정부 간 무역분쟁의 우선적 해결수단이어야 한다. 실제에 있어서 많은 양자 간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분쟁해결체제에서 법률적 수단 또는 혼합 방식을 많이들 채용하고는 있으나, 양자간 RTA와 관련한 분쟁해결제도 절차를 개시한다는 보도는 거의 접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와 관련한 판례를 거의 접할 수 없다. 즉 대부분의 이러한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이는 양자간 RTA의 계약국 쌍방의 상호간 신의와 조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⁷⁾

비록 협상이 ECFA 체제하에서 중국과 대만 정부 간 경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 전체적 절차이기는 하지만, 중국과 대만 간의 특수한 정치적 관계 및 경제관계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중국과 홍콩/마카오 CEPA에서 채택하고 있는 완전한 정치적 해결방식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분쟁의 해결방식으로 직접 채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ECFA에서는 중재 관정부 또는 전문가조직 등과 같은 분쟁해결기구를 두어 양자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충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⁵⁸⁾

V. 결론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서 하나의 지방 성(省)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과 상호 대등한 정치적 실체의 인정을 요구하는 대만 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좁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대만은 두 지역 간 투자와 관련하여 2010년 ECFA 체결 이전에는 어떠한 양 지역 간 투자관련 협정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서 중국과 대만은 각자 자체적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두 지역 간 투자관련 문제를 규율하고 해결하였다. 특히 중국은 대만과의 교역 및 대만 투자자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장려·보호하기 위하여 ‘대만 동포투자보호법’과 같은 여러 법률 및 규칙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 고유영토

56) 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이 WTO 가입한 이후 분쟁해결 방면에 있어서 상이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즉, 대만은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사건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제소국 신분으로 2002년 DS274(피소국 미국) 사건, 2004년 DS318(피소국 인도) 사건, 그리고 2008년 DS377(피소국 EU)에 각각 참여하였다.

57) 彭莉, 전계논문, p. 40.

58) 彭莉, 상계논문, p. 40.

의 일부분으로서 대만 문제는 국내 문제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대만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체결은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두 지역 간의 특수한 관계는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지역만의 특수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 지역 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사인 간의 투자분쟁과 관련하여 뉴욕협약처럼 두 지역을 규율할 수 있는 협정을 통해 상대방에서 내리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준거법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각 지역의 자체 법률에 따른 상호 승인 및 집행은 정치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투자분쟁과 관련하여 두 지역은 모두 어떠한 해결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법률적 해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두 지역은 ICSID 협정을 참조하여 동 협정과 유사한 두 지역 간 협정의 체결이 요구되며, 정치적인 이유로 이러한 협정의 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한 중국과 대만 모두 자체적인 입법을 통해 상대방 투자자와 본국 정부 간의 투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두 지역 정부 간 투자분쟁과 관련해서는 두 지역 간에 체결한 ECFA의 투자관련 규정을 보강하여 우선적으로 정치적 방식 즉 양 지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보충수단으로 중재 등을 통한 분쟁해결규정을 삽입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두 지역 간 투자분쟁 해결체계의 구축은 두 지역의 정치적인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현재와 같은 중국과 대만 간의 성공적인 경제협력으로 미루어 우리와 북한 간의 경제협력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⁵⁹⁾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간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관련 법제를 형성하고 있다. 남북한의 교류협력 관련 법제 역시 과거에는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교류협력 관련 법제를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당국 간 공식 회담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 결과물인 당국 간 ‘남북합의서’의 체결, 이에 대한 발효절차 이행을 통한 법적 효력 부여, 이를 바탕으로 한 각자의 관련 하위 법제 정비 순으로 교류협력 법제를 구축하는 관행이 점차 정착되고 있다.⁶⁰⁾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2000년 12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 등에 관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관련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59) 1991년 12월 13일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전문 및 2005년 12월 29일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참조.

60) 법무부, 전게서, pp. 513-514.

그리고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 소위 4대 경협합의서를 체결하였다.⁶¹⁾

이처럼 남북 간은 중국과 대만 간에 비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경제협력관련 법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대만의 관련 법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한과 북한은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법률적 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거래는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거래에 비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참 고 문 헌

- 김다영, 「대만 중국자본 투자 3차 개방」, kotra 경제/산업 동향, 2012.
- 김석민, “한·중 FTA 이행을 위한 무역구제조항의 비교법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200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홍콩 CE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서비스협상을 중심으로」, KIEP 지역경제 포커스 09-28호, 2009.
- 박완근, “중국대륙과 대만사이의 상사중재 현황과 전망 -북한개성공단의 상사분쟁해결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16권 제2호, 2004.
- 법무부,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연구」, 법무부, 2008.
- 이재민, “ISD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13권 2호, 2006.
- 정용균, “중국에서의 상사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동향과 제도개선 연구 : 외국투자자 관점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0권 제1호, 2010.
- 하현수, “중국과 대만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1호, 2009.
- 하현수, “중국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서 공공질서 적용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3호, 2011.
- korta, 「ECFA 우리기업에게 득인가, 실인가?-ECFA 체결 1주년 점검」, KOCHI자료 11-008, korta, 2011.
- 金文杰, “大陸赴臺投資保險可行途徑淺析”, 『益陽職業技術學院學報』, 2010年 第1期, 2010.
- 盧炯星·霍一峰, “論海峽兩岸投資中的問題及法律對策”, 『海峽兩岸WTO法律論壇論文集』, 2007.
- 戴肇洋, “建立海峽兩岸經濟合作之研究-兼論簽署ECFA續待解決之問題”, 『綜合競爭力』, 2010年 第4期, 2010.
- 董世忠, 『國際經濟法』, 北京: 復旦大學出版社, 2009.

61) 이들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정식 서명되었고, 2003년 6월 30일 남북 간 합의문건으로서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체결동의안이 정식으로 통과되었으며, 그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남북한 당국이 2003년 8월 20일 남북 간 발효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 徐步林, “海峽兩岸司法協助現狀及發展”, 『法制與社會』, 2009年 第9期(下), 2009.
- 徐崇利, “晚近國際投資爭端解決實踐之批判: ‘全球治理’理論的引入”, 『法學家』, 2010年 第3期, 2010.
- 孫志煜, “區域經貿爭端解決的制度與實踐—以中國-東盟自由貿易區為例”, 『法學評論』, 2011年 第1期, 2011.
- 吳智, “兩岸投資走向自由化的法律路徑選擇”, 『時代法學』, 第7卷 第6期, 2009.
- 吳智, “從WTO法角度審視臺灣限制大陸直接投資的非法性與不當性”, 『國際經濟法學刊』, 第15卷 第1期, 2008.
- 姚若賢, “臺商隱名投資權益的法律保護”, 『福建法學』, 2009年 第3期, 2009.
- 劉想樹, 『中國涉外仲裁裁決制度與學理研究』, 北京: 法律出版社, 2001.
- 劉仁山, “我國大陸與臺灣地區民商事判決相互承認與執行現狀, 問題及思考”, 『中國國際私法學會2009年會論文集』, 2009.
- 尹紅, “臺灣地區‘陸資入臺’相關法律分析”, 『湖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11卷 第3期, 2010.
- 王淑敏, “后ECFA時代兩岸投資爭端的司法協助探析”, 『國際貿易問題』, 2011年 第7期, 2011.
- 王傳麗, “WTO: 一介自給自足的法律體系-兼論一國四地經貿法律新發展”, 載陳安主編『國際經濟法學刊(第11卷)』,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 李忠義, “對臺商投資征收及其補償的幾點思考”, 『福建法學』, 2010年 第4期, 2010.
- 林銀木, “‘陸資入臺’可能面臨的投資風險及其應對之策”, 『福建法學』, 2010年 第2期, 2010.
- 林一飛, 『中國國際商事仲裁裁決的執行』, 北京: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2006.
- 張萬明, 『涉臺法律問題總論』, 北京: 法律出版社, 2003.
- 曾憲義, 『海峽兩岸交往的法律問題』, 北京: 河南人民出版社, 1992.
- 陳力, “海峽兩岸民商事法方面協作的困境與出路”, 載于『海峽兩岸民生與經貿往來中的法律問題』, 北京: 法律出版社, 2009.
- 陳力, “海峽兩岸投資爭議解決機制之構建與完善”, 『復旦學報(社會科學版)』, 2011年 第6期, 2011.
- 陳泉生, 『海峽兩岸關係的法律探討』, 北京: 四川大學出版社, 1992.
- 彭莉, “論ECFA框架下兩岸經貿爭端解決機制的建構”, 『臺灣研究集刊』, 2010年 第6期, 2010.
- 包運成, “我國有關‘陸資入臺’法律問題初探”, 『社會科學家』, 2010年 第2期, 2010.
- 黃潔, “陸資赴臺法律保障問題研究”, 『河北法學』, 第30卷 第3期, 2012.
- 黃萃·紀文華, “區域貿易協議爭端解決機制構建與實效反差研究”, 『國際貿易研究』, 2010年 第12期, 2010.

ABSTRACT

A Study of the Resolution Mechanism for Investment Disputes between China and Taiwan

Hyun-Soo Ha

Although political uncertainty exists between China and Taiwan, the two countries have been expanding their economic exchange since the 1980s. That economic exchange is not limited to trade, and its investment segment is constantly expanding. The investment was one-sided by Taiwan in the past, but since a change in policy by the Taiwan government in 2009, Chinese capital is able to flow into Taiwan for direct investment. These kinds of policy changes related to invest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require follow-up actions such as profit protection for investors, elimination of investment limitations, simplification of investment procedures, and establishment of an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main topic of this study is the resolution mechanism for investment disputes between China and Taiwan. At present, an individual investment dispute between two countries is settled according to each country's own regulations for dispute resolution. However, these two countries have not prepared dispute resolution regulations related to cases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Chinese or Taiwanese investors and the Chinese or Taiwanese government, or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Taiwanese government. Moreover, they do not have any agreements related to investment disputes.

Therefore, in this paper, I enumerate the regulations related to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and then I point out the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for improvement. Also, through this study, I would like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n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Key Words: Investment Disputes, Resolution Mechanism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Investment Disputes between China and Taiwan